

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물 절약을  
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3 월 15 일

여 수 시 장

2023.3.15



여수시 조례 제1855호

붙임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  
한 조례 1부.

##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5조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수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·시행)**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)**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다.

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)**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
2.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, 홍보 및 포상
3.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
4.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

**제7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)**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또는 설치필증
2. 납품확인서
3.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
4. 현장설치사진

**제8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)**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시설에 해당하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**제9조(과태료)**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